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4680 판결 [사전구상금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203384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4680 판결

전문

원고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대식, 이강지

원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트

담당변호사 변준석, 송도영, 안일운, 조은별, 최성호, 전용환, 박소희, 송지영, 장윤서, 김지수

피고1. 주식회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다

담당변호사 박명국, 이동호, 김형운

변론 종결2023. 6. 13.

판결 선고2023. 7. 1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863,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8.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9호증, 갑가 제4 내지 6, 8,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5.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2018. 4.

20. 소외 주식회사 B(변경전 명칭 : F 주식회사, 이하 '원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체결한

총판업무제휴계약(G 객실&스파&찜질방 판매대행,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선지급금반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원고 보조참가인, 보험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보험가입금액 5억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채권의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만제일까지는 연 9%이다.

이 때 피고 D는 보험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D의 H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5,000만 원에 대한 수익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총판계약은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속초시 I 일원에 소재한 G의 객실&스파&찜질방입장권에 관해 원고 보조참가인이 총판을 진행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5. 8. 피고 회사에 선매입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시설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총판권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다.항, 라.항).

다.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8. 11. 15. 및 2018. 11. 29. 피고 회사에 2018. 11. 1.부터 객실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하니 잔여 선매입금 219,742,230원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22. 8. 8. 원고에게, 2018. 11.경부터 객실 판매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선매입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213,160,471원(2022. 8. 17. 지급한 217,123,871원 - 2022. 8. 23. 정산오류로 환급받은 3,963,400원)이다.

라. 원고는 2022. 4. 14. 피고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위하여 515,780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2022. 8. 17. 피고 D가 담보로 제공한 위 정기예금채권 51,812,742원(원금 5,000만 원 + 이자 1,812,742원)을 환입하고 이를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서 제5조가 정한 변제 등 총당 순서에 의해 위 515,780원에 우선 총당하고, 나머지 51,296,962원은 지급보험금의 원금에 총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1.경 객실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총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반환할 선매입금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총판계약에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없어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험사고의 발생 앞에서 든 증거, 갑가 제3, 7, 10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판계약에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해지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 보조참가인이 보낸 2018.

11. 15.자 공문이 당일 피고 회사에 도달됨으로써 이 사건 총판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인 2018. 11. 29.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선매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총판계약에 원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에 앞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J이 운영하는 'G'에 관하여, 2018. 4. 20. 스파 및 찜질방 입장권에 대한 독점·배타적 판매권[J의 홈페이지 예약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홈 티켓' 및 피고 회사의 사이트 및 온라인 쇼핑몰, 온·오프라인 여행사, 소셜커머스, 카드사, 통신사, 온·오프라인 복지물(폐쇄물) 등 피고 회사의 제휴사가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에 관하여]에 관한 총판업무제휴계약을, 2018. 4. 25.에는 객실 및 객실패키지 상품에 대한 단독 판매권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총판계약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피고 회사가 스파&찜질방입장권과 객실이용권에 관한 독점 배타적 판매권을 부여하는 계약으로 총판 업무의 범위를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는 홈 티켓, 여행사, 소셜, 복지물(폐쇄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계약이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2018. 11. 20. '11월 영업 중단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호텔측과 논의 중이다. 보상안에 대해서도 곧 회신하겠다, 2018. 12. 5.부터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2018. 11. 29. '현재 호텔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12월 초 영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호텔 운영을 이끌던 부총지배인 K와 일부 임직원들이 11월 30일 퇴사하고, 11월 29일부터 인수인계를 시작한 새로운 총괄지배인과 운영본부장에게 호텔 12월 영업 개시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보냈다.

③ 피고들은 객실 및 객실패키지 상품은 소셜커머스(L, M, N)의 단독 판매권을 보장하는 것일뿐, 독점 배타적 판매권을 보장한 스파&찜질방 입장권과 다르고, 따라서 객실 상품의 판매 및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판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스파&찜질방입장권을 비롯하여 객실이용권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을 통한 독점 배타적 판매권을 부여한 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원이 2018. 12. 27. 피고 회사에 스파입장권에 대한 2019. 1월 내지 2월 요금 정책을 알려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 보조참가인이 2018. 12.까지 스파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객실에 대해서는 2018. 11. 1.부터 총판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지만, 2018. 12. 31.까지 스파입장권 판매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최종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스파입장권을 계속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보조참가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번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보조참가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번복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2018. 12. 31.부터는 스파이용권에 대해서도 장애가 발생하였다.

⑤ 피고들은 G의 운영에 2018. 11.경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총판계약은 2019. 4. 30.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적으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는 선매입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객실 상품에 대한 장애는 2018. 11. 한 달 동안 계속 되었고 피고들은 호텔 운영진이 교체된 후 2018. 12.초부터는 호텔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객실에 이어 2018. 12. 31.부터 스파이용권까지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총판계약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2018. 11. 15.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문이 피고 회사에 도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된바, 일시적 장애에 불과하여 해지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 갱신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들은 또한 업계의 관행은 계약 기간이 끝나 정산 후 선매입금이 남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전환시켜 소진시까지 계속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선매입금

반환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총판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고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⑦ 피고들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J이라고 주장한다. 즉 당초 원고 보조참가인은 J과 총판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J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없어 중간에 피고 회사를 끼워, 피고 회사와 J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 회사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피고 회사와 J 사이에 체결된 총판업무제휴계약 및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J에게 실질적인 판매가의 70%를 입금하고 남은 30% 중 25%를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수익이 5%에 불과한 피고 회사가 5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닌 피고 회사에게 선매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J과 피고 회사 사이에 총판업무제휴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이 사건 총판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총판계약 이후 원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 회사가 J의 가격정책 변동사항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고지하고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전달하는 등 상호 간에 지속적인 업무연락과 협의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 보조참가인의 직접 거래 상대방이 J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구상금 채무 그렇다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즉 161,863,509원(지급보험금 213,160,471원 + 보전비용 515,780원 - 환입금 51,812,742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보험금지급 다음날인 2022. 8. 18.부터 2022.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3. 6.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3. 6. 13.까지는 연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최은주